

2009년 8월7일 조간 부터 사용해 주십시오.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노동부 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◆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 : 임영섭
담당 사무관 : 김광석

• T E L : 6922-0958

• E-MAIL : taichi21@naver.com

• F A X : 6922-0973

◆ 2009. 8. 6 배포

◆ 총 3 쪽

>

안전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을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제 시행

-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석면 해체·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야한다.
- 그동안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은 작업장별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얻은후 작업을 해 왔으나,
 - 석면 함유 건축물의 불법철거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
 - 석면 해체·제거 작업량이 급증하여 지도·감독에 한계가 있었으며 무허가 불법작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석면관련기관의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.
- ※ 석면해체·제거 허가 건수 : 1933건('07년) → 11,114건('08년) → 12,495건('09년 7월)
-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사항에 따르면,

-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하고자 할 경우, 작업전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,
 -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, 노동부는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 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철거·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- 또한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(1%초과)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·제거해야 한다.
- 아울러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,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·제거 작업후 공기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(석면농도기준, 0.01개/cm³) 이하가 되도록 해야한다.
- 한편,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후에는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일정 수준이하(0.01개/cm³)로 유지하도록 하여 다음 단계인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마스크, 보호의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건축물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도 석면에 의한 위해성이 없도록 할 것이다.
- 노동부는 전문조사기관과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능력 및 석면해체업자의 수준을 평가하여, 전문성과 신뢰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.
-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대상
 -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이상,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
 -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 내화피복재, 개스킷 패킹, 실링제, 그 밖의 유사용도의

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³이상,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

□ 등록된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·제거 대상

○ 석면이 1%초과 함유된 벽체재료, 바닥재, 천장재 및 지붕재 등 면적의 합이 50m²이상,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등

○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단열재, 보온재, 개스킷, 패킹재, 실링재 등과 그 밖의 유사농도의 자재로서 면적의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³이상,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

□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인력, 시설, 장비기준

○ 조사인력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 1명 이상과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1명 이상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

※ 석면조사자 과정 :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, 석면조사실습 등 18시간(이론 10, 실습 8)

○ 분석인력은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학, 환경보건학, 화학 등을 전공한 자 1명 이상

○ 장비기준으로는 시료채취펌프, 편광현미경, 위상차현미경, 흡 후드 등 측정과 분석에 필요한 장비 11가지를 구비

□ 석면해체·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, 시설, 장비기준

○ 인력의 경우 토목·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나 기술자격증을 가진 자와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1명 이상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

※ 석면해체·제거관리자 과정 :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방법,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실습 등 18시간(이론 10, 실습 8)

○ 장비의 경우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·진공청소기, 음압기록장치,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, 위생설비, 습윤장치를 필수적으로 구비

※ 참고로,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(10년~30년)를 감안할 때 석면의 유해면지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개발,재건축사업등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허물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.

붙임 : 석면제도 홍보팜플렛 “2009년 8월 7일부터는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” 1부